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994 발의연월일: 2021. 8. 10.

발 의 자 : 이수진(비) · 김경협 · 김영배

송옥주 · 심상정 · 안호영

윤미향 · 윤영덕 · 이규민

장경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정원의 3% 이상 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실업문제를 해 소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.

특히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청년실업난은 상당 기간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청년고용을 적극적으로 확 대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정원 대비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을 5%로 상향조정하고, 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에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힘쓰도록 하며,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이 청년고용률 제고에

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4조제2항, 제5조제1항, 제8조의2제1항· 제2항, 제8조의4제1항·제2항 및 제16조).

법률 제 호

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

제5조제1항 본문 중 "3"을 "5"로 한다.

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"정부는"을 "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"으로 한다.

제8조의4제1항 및 제2항 중 "정부는"을 "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"으로 한다.

제16조 중 "정부는"을 "고용노동부장관은"으로, "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인력수급 및 취업정보를"을 "정부, 지방자치단체,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인력수급과 취업정보를"로 한다.

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"2 021년 12월 31일"을 "2023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	제4조(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
설치 등) ① (생 략)	설치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	2
사항을 심의한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1의2.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정
	부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
	력에 관한 사항
2. ~ 4. (생 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5조(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	제5조(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
고용 의무) ① 「공공기관의	고용 의무) ①
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	
공기관과 「지방공기업법」에	
따른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	
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	
공기업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	
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100	
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	<u>5</u>
를 고용하여야 한다. 다만, 구조	
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	
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	
경우는 제외한다.	
② ~ ⑥ (생 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8조의2(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) ① <u>정부는</u> 청년이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기업등 에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정부는 기업등이나 경제단체 또는 대학등이 제1항에 따른 직장체험 기회 제공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있다.

제8조의4(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) ① 정부는 저학력,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을 이유 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에게 개인별 심층상담을 통한 직업경로 설계, 직장체험·직업 능력개발훈련을 통한 취업의욕 과 능력 증진, 취업 알선 등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<u>정부는</u> 제1항에 따른 고용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

제8조의2(청년에 대한 직장체험
기회 제공) ① <u>정부 및 지방자</u>
치단체는
<u>.</u>
②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
<u>.</u>
제8조의4(취업에 어려움을 겪는
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
제공) ① 정부 및 지방자치단
체는

참여를 유도하고 취업을 촉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제16조(통합인력전산망의 설치)
정부는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인력수급 및 취업정보를 연결하는 통합인력전산망을 구축하여 인적자원이효율적으로 배분·활용되도록하여야 한다.

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(유효기간) 제5조의 개정규 정은 <u>2021년 12월 31일</u>까지 효 력을 가진다.

<u>.</u>
③ (현행과 같음)
제16조(통합인력전산망의 설치)
고용노동부장관은
<u>정부, 지방자치</u>
단체,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
인력수급과 취업정보를
<u>.</u>
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
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
제2조(유효기간)
2023년 12월 31일